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765

발의연월일: 2024. 9. 6.

발 의 자: 백종헌 · 서천호 · 김예지

정성국 • 박충권 • 유용원

박준태 • 정동만 • 고동진

진종오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으로 인한 위해는 기후 변화, 환경 오염 등 제반 환경 변화에 따라 생물학적 위해에 의한 부적합, 신규 위해요소의 출현 등 그 발생 양상이 변화하고 있음. 식품의 안전은 생산부터 소비까지 총체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특히,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을 위협하는 주요 위해 요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사전예방적 대응을 위해서는 위해요소의 발생 가능성이 위해요소와 관련된 환경, 생산, 유통 등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 수집·분석을 토대 로 과학적으로 예측되어야 하며, 이러한 예측의 결과는 식품의 안전한 생산, 유통 및 소비에 활용될 수 있음.

이에 정부가 식품의 위해요소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위해 발생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사전적인 식품안전관리를 통해 국민의 안전한 식품 소비와 건강한 식생활의 영위

는 물론 식품 안전사고 예방을 통한 경제·사회적 비용 감소와 소비자 후생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2조제8호,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4까지 신설).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안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8. "위해예측"이란 식품등의 생산부터 소비까지의 과정에서 위해요 소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모델·시나리오 개발을 통해 위해의 정도를 과학적으로 예측하는 것을 말한다.
- 제4장에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3조의2(위해예측의 실시 등) ① 정부는 식품안전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식품안전정책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해예측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정부는 위해예측을 실시하기 위해 조사·연구, 기술개발, 전문기 관 지원,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위해예측의 실시 및 제2항에 따른 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3조의3(식품위해예측센터 설립·지정)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 23조의2에 따른 위해예측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으로 식품위해예측센터(이하 "예측센터"라 한다)를 설립하거나 위해예측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예측센터

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예측센터를 설립하는 경우 예측센터는 법인으로하고,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③ 예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위해요소 관련 정보의 수집 · 분석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 2. 기후・환경 요인과 위해요소 간의 상관관계 등 조사・연구
- 3. 위해요소 예측 모델 개발
- 4. 위해요소 대응 시나리오 개발 및 예보 지원
- 5. 위해예측에 기반한 식품안전정책 수립 지원
- 6. 위해예측에 관한 국제협력
- 7. 그 밖에 위해예측 관련 정보 수집·활용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사업
- ④ 예측센터의 장은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위해예측 실시를 목적으로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등 위해예측에 필요한 정보를 보유한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이나 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예측센터의 설립·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예측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 3. 예측센터의 사업실적 등이 현저히 부실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 예측센터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4.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 등으로 예측센터의 사업을 계속 수행하기 어렵게 된 경우
- 5. 제7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6. 그 밖에 예측센터의 업무 수행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식품의약 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 ⑦ 예측센터의 설립,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3조의4(예측센터의 지도·감독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예측센터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② 예측센터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u> <신 설></u>	8. "위해예측"이란 식품등의 생
	산부터 소비까지의 과정에서
	위해요소와 관련된 정보를
	<u>수집·분석하고,</u> 모델·시나
	리오 개발을 통해 위해의 정
	도를 과학적으로 예측하는
	<u>것을 말한다.</u>
<u><신 설></u>	제23조의2(위해예측의 실시 등)
	① 정부는 식품안전정책의 수
	립・시행 및 식품안전정책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해
	예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위해예측을 실시하
	기 위해 조사・연구, 기술개발,
	전문기관 지원, 국내외 협력체
	계 구축 등의 시책을 추진할
	<u>수 있다.</u>
	③ 제1항에 따른 위해예측의
	실시 및 제2항에 따른 시책 추
	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u>으로 정한다.</u>

<신 설>

- 제23조의3(식품위해예측센터 설립·지정) ①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은 제23조의2에 따른 위해 예측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인 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으로 식 품위해예측센터(이하 "예측센터"라 한다)를 설립하거나 위 해예측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예측 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예측센터를 설립하는 경우 예측센터는 법인으로 하고,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③ 예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위해요소 관련 정보의 수집

 •분석 및 데이터베이스 구

 축
 - 2. 기후・환경 요인과 위해요소 간의 상관관계 등 조사・연구
 - 3. 위해요소 예측 모델 개발4. 위해요소 대응 시나리오 개

발 및 예보 지원

- 5. 위해예측에 기반한 식품안 전정책 수립 지원
- 6. 위해예측에 관한 국제협력
- 7. 그 밖에 위해예측 관련 정보 수집·활용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사업
- ④ 예측센터의 장은 제23조의2 제1항에 따른 위해예측 실시를 목적으로 제3항 각 호의 사업 을 수행하는 경우에 국가, 지 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등 위해 예측에 필요한 정보를 보유한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이나 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예측 센터의 설립·운영 등에 필요 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 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 항에 따라 지정된 예측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 3. 예측센터의 사업실적 등이 현저히 부실하여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예측센터로서 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4.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 등으로 예측센터의 사업을 계속 수행하기 어렵게 된 경우
- 5. 제7항에 따른 지정기준에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6. 그 밖에 예측센터의 업무 수행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 하는 경우
- ⑦ 예측센터의 설립,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u> 정한다.</u>
<u><신 설></u>	제23조의4(예측센터의 지도・감
	독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은 예측센터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
	<u>을 할 수 있다.</u>
	② 예측센터에 대한 지도・감
	독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